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사업자 ‘인증’ 을 ‘지정’ 으로 변경〉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56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수사업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우수사업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의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우수사업자 <u>인증</u>)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u>인증</u>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 <u>지정</u>) ① ----- ----- -----지 <u>정</u> 할-----.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u>인증</u> 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u>인증</u> 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지 <u>정</u> 을----- ----- ----- -----지 <u>정</u> 이-----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u>인증</u> 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 <u>인증사업자</u> ”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서</u> 를 발급할 수 있으며 <u>인증사업자</u> 는 <u>인증표시</u> 를 할 수 있다.	③ -----지 <u>정</u> 을----- -----지 <u>정</u> 사업자----- -----지 <u>정</u> 서를----- -----지 <u>정</u> 사업자는 지 <u>정</u> 표시를-----.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④ 지정사업자가-----
-----지정표시-----
-----.

⑤ -----
---지정을-----

-----지정에-----
-----.

⑥ -----지정사업자
가-----지정기준을-----

-.

⑦ -----지정사업자
에-----

-----.

⑧ -----지
정-----지정표시
의-----
-----.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① -----
-----지정사업자가-----

-----지정을-----

-----지정을-----.

1. -----
-----지정을-----
2. -----지정기준
에-----
3. (현행과 같음)

② 지정사업자는-----

<u>인증이</u>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u>인증서를</u>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u>인증표시의</u>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인증을</u>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u>인증을</u>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u>인증표시</u>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생략)	<u>지정이</u>----- -----<u>지정서를</u>----- -----<u>지정표시의</u>----- -----. ③ ----- ---<u>지정을</u>----- -----. 제24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정을</u>----- 3. -----<u>지정표시</u>-----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 및 제1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우수사업자에 대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우선적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수사업자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①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우수 관상어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②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됨.

이는 우수한 관상어를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춘 관상어양식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여 관상어산업의 품질 제고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행정상 ‘인증’의 여러 유형 중 특정 분야 또는 정책을 지원·육성하는 진흥 목적의 인증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법제처는 기존 규제·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인증실적이 저조하여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 인증이 다수 존재하고 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기업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인증제도 정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소비자의 혼선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 등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하기로 하였음¹⁾.

개정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제 개선 방안에 따라 현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사업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지정’과 ‘인증’은 법체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1)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15.

- ‘지정’은 주로 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등으로 사용됨.
- ‘인증’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²⁾, 또는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³⁾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그 목적·성격에 따라 규제를 위한 인증, 진흥을 위한 인증, 규제·진흥을 위한 복합적 목적의 인증으로 나뉨.

그리고 현행 법체계상 ‘인증’ 중 다수는 인증을 통해 특정 분야 또는 정책을 지원·육성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원·육성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우수사업자 인증의 경우 지원·육성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인증으로, 그 용례상 지원·육성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법제처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중 다수를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⁴⁾.

2)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15.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354

4) 인증제도를 지정 등 다른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다만 부칙의 경우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할 때 하위법령의 개정
소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법제처 인증규제 개선 계획 및 정비대상 목록

*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2024. 2. 15. 중에서 향후 계획 및 인증을 다른 제도로 변경하는 정비대상 목록을 발체

V. 향후 계획

- 인증의 통·폐합, 개선 및 자기적합성 선언 등 관련 법령 정비
 - 인증에서 제외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명칭 변경 등 조치
 - 폐지·제외 대상인증은 「e나라 표준인증」(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삭제하고, 향후 인증의 마크 사용을 제한
- 인증 관리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인증정의(신설), 인증신설 절차 강화 및 공공조달 가점 정비

개선방안	부처명	추진일정	
		'24	'25
① 인증제도 정비			
①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5개)	소관 부처		
②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소관 부처		
③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5개)	소관 부처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소관 부처		
②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⑤ DOC 신규 도입 및 확대	과기·산업·해수		
⑥ 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과기·산업·소방		
⑦ 해외인증 인정 확대	소관부처		
③ 관리시스템 개선			
⑧ 인증 신설 절차 강화	산업(국표원)		
⑨ 공공조달 인센티브 합리화	조달청		

□ 정비대상 목록 (해양수산부 소관 발췌)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완료시한
해수부	갯벌생태관광 인증	임의	갯벌 관리구역 지정, 청정갯벌 지정, 갯벌 생태마을 지정과 같이 지정으로 전환	갯벌 관리와 복원법 개정	'24 上
해수부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닌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	관상어산업 육성지원법 개정	'24 下
해수부	수산물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임의	현행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등록/표시 제도로 전환	수산물식품산업육성지원법 개정	'24 下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	임의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등록제도로 전환 (해수부에서 현재 등록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완료
해수부	수산물식품명인	임의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해수부에서 현재 지정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완료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우수한 선화주 기업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인증보다는 지정제도로 전환	해운법 제47조 개정	'24 下
해수부	우수천일염 인증	임의	이미 소금 품질검사제도가 있으므로 천일염의 우수성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불필요하며 필요시 지정제도로 전환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개정	'24 下
해수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인증의 대상으로 부적합하여 등록/지정제도로 전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법률 개정	'24 上
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24 上
해수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임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지정/인증 등으로 전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법	'24 下